

#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

제 정 2015. 5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우송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함) 학칙에 따라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(이하“영향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설치)**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

**제4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**제5조(임기)**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의 출제 여부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
2. 기타 입학전형에서의 선행 학습 유발 요인에 관한 사항

**제7조(시기)** 매년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**제8조(회의)**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비밀유지)**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0조(보칙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의 특례)** 이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